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중대재해 행정/노무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사고의 정보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
	IP	②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기업송무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공포 법령	ESG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입법/행정예고	ESG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매장에서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노웅래 (더불어민주당)</p>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p>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p> <p>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p> <p>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p>	<p>헤럴드경제 22.09.25. 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된다</p> <p>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25000123</p>	22.09.23. 제안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A2T0J8U2X5Q1M4I4H2B2M4C6T5C0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조수진 (국민의힘)</p>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포렌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이용되게 하는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I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다양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은 이러한 형사사건의 절차 중 하나의 기법을 넘어 민사소송, 재난·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민간 영역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 개발과 연구, 보급에 뛰어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함이 부족하여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렌식을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법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추진 체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개발,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22.09.20.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다. 디지털포렌식사업자 지원 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포렌식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디지털포렌식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p>라. 디지털포렌식산업 기반조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2P0F8H0I8B110U2N9R2U0T3T3A2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이용우 (더불어민주당)</p>	<p>상법 일부개정법률안</p>	<p>■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p>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D2E0S3U1A4W0V9T0Y2V0X1D9L0G2</p>	<p>서울경제 22.09.04. 소액 주주에 자회사 주식 안주면 '물적 분할' 못한다</p> <p>https://www.sedaily.com/NewsView/26AXZSDJ76</p>	<p>22.03.22. 제안</p> <p>22.03.23. 상임위 회부</p>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p>■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p> <p>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p> <p>「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p>	<p>서울신문 22.09.22.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때 앞으론 기후변화 영향도 평가한다</p> <p>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2500079</p>	<p>21.09.24. 제정</p> <p>22.09.25. 시행</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 주요내용</p> <p>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p> <p>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p> <p>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부진·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p> <p>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p> <p>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p> <p>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p> <p>자.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금융,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인증, 집적지·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p> <p>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p> <p>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p>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p>매일경제 22.09.23.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제주·세종부터 시작</p> <p>https://www.secdaily.com/NewsView/26B4V7VDP</p>	22.09.26. ~ 22.11.07.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09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및 방송

[경향신문][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올해에만 건설노동자 3387명 다치거나 숨졌다" (2022.09.28.)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9281023001>

주요내용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총 766명이 숨지고 1만589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됨.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올 1~8월에만 3387명(사망 139명·부상 3248명)이 다치거나 숨졌음. 부상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고는 '넘어짐'사고로, 지난 3년간 3526명의 노동자(22.3%)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음. 그러나 이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사상자 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준호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건설현장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 원인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실태파악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함.

[서울신문][기사] "여수산단 사고, 중대재해 처벌이 명약 될까?" (2022.09.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8500027&wlog_tag3=naver

주요내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등 여수지역 노동단체들은 27일 여수산단내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공장에서 안전 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전대책 소홀이 가져온 전형적인 인재며,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노동단체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와 지난 2월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NCC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꼽고 두 업체의 처벌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함.

[KBS뉴스][방송] "중대법,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법 취지 훼손" (2022.09.2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7051&ref=A>

주요내용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재계 등의 개정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정부·여당도 호응함. 최근 고용노동부가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게 한 시행령 개정을 노동부에 요청함. 여소야대 국면에 법 개정이 쉽지 않자, 우회하는 길을 택한 셈인데, 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거란 비판이 나옴. 노동계는 '사주 일가'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도 모자라 관련 법령을 축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함. '안전 보건 인증'을 받으면 면책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과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재 사망사고는 전북에서만 모두 7건이며, 전국적으로는 150여 건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7분의 1 남짓에, 기소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함.

[SBS비즈][방송] "[뉴스'까'페] 중대재해 70% 노후 산업단지...기업에만 맡겨선 안된다" (2022.09.29.)

<https://biz.sbs.co.kr/article/20000082295?division=NAVER>

주요내용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 7건 가운데 6건이 40년 이상 노후된 산단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석유화학 단지의 경우, 자칫 지역사회 전체를 재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데, 현장 노동자들과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단 시설의 노후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여수산단과 같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는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관련법 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123건으로, 226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으로 전체 중대 사고 사상자의 71.7%에 달했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위험물 관리법을 담당하는 소방청도 노후 산단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노후 설비의 관리·감독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함. 강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후 설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임.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



김광수
파트너변호사
T : 02-3016-7405
E : kskim2@draju.com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행정/노무팀

IP팀

기업송무그룹

ESG자문그룹